

장애학생지원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학업 및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장애학생이라 함은 장애인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을 말한다.

제2장 장애학생지원

제3조 (원칙) 장애학생에게 교육, 수업, 학내활동 및 진로지도 등에 있어 일반학생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교수·학습지원) 우리 대학교는 장애학생의 교수·학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선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지원
2. 도우미 배정
3. 교수, 학습 기자재 대여
4. 기타 장애학생의 교수, 학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제5조 (대학생활지원) 우리 대학교는 장애학생의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숙사 등의 대학생활 지원
2. 장애학생 상담
3. 진로상담, 취업준비 지원 등의 진로지원
4. 취학편의 및 편의시설 지원
5. 기타 학생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제6조 (장애학생지원센터) ①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9명)인 경우에는 학생지원처에 전담직원을 둬으로써 이에 갈음 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학 생활 중의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사항
- ③ 센터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상담교수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전담 조교를 둘 수 있다.

제3장 장애학생지원위원회

제7조 (구성) ①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학생들의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교무처장, 사무처장, 장애학생 소속 학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심의한다.

1. 장애학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지원센터(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 지원제도의 개선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애학생 지원에 관련된 제반 사항

제9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이나 전자메일 등의 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사무) ① 위원회의 사무는 장애학생 지원부서에서 간사를 맡아 관장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